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6. 24.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조남문

**1. 제안자:** 성동구청장

##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확대(안 제4조)

- 1)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신고기한 규정 단서 신설

다. 신고유형별 보상금 지급기준 세분화(안 별표)

- 1)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 행위 등 신고유형에 따라 보상금 기준 세분화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4. 22. ~ 5.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받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제2019-318호, 2019. 7. 15. 의결) 권고안에 따라
  -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부조리 신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포함되도록 정비하고,
  -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관련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5년으로 확대, 중대범죄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부조리 행위의 신고유형을 명확히 하고, 그 지급기준을 상세화한 것입니다.

- 이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 < 관련법규 >

### 붙임 1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붙임 2

### 「공직자윤리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붙임 4****「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